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92조제3항제6호	30	45	70
나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92조제1항제1호	100	150	300
다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2조제3항제1호	15	30	60
라.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	법 제92조제3항제1호의2			

경이나 휴업·폐업 또는 재 개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			
1) 변경·휴업 또는 재개업 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		30	40	50
2)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		50	75	100
마. 법 제21조의2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92조제2항제1호			
1)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	100	150	200
2)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		200	200	200
바. 법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 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	법 제92조제1항제1호의2	100	150	300
사.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 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 은 경우	법 제92조제1항제1호의3	300	300	300
아. 법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 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 은 경우	법 제92조제1항제1호의4	300	300	300
자. 법 제33조제5항(법 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2조제3항제2호	50	75	100
차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 선 발생장치를 설치·운영한 경우	법 제92조제1항제2호			
1)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 게 설치·운영한 경우		300	300	300
2)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		50	75	100

<p>치·운영한 경우</p> <p>카.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</p> <p>1)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</p> <p>2)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</p> <p>3)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</p> <p>4)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</p> <p>5)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에 있어 선량 한도를 넘은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</p> <p>6)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·분실 등 피폭선량계를 2회 이상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92조제1항제3호</p>			
		50	75	100
		100	150	200
		100	150	200
		100	150	200
		50	75	100
<p>타.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92조제3항제2호의2</p>	50	75	100
<p>파. 법 제40조제1항(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 <p>1)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92조제3항제3호</p>			
		50	75	100

2)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80	90	100
3) 삭제 <2023. 2. 28.>				
하.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92조제3항제3호의2			
1)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은 경우		80	90	100
2)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	100	100	100
거. 법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92조제3항제3호의3			
1)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50	75	100
2)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		100	100	100
너. 법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은 경우	법 제92조제3항제3호의4			
1)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		50	75	100
2)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은 경우		80	90	100
더.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92조제3항제3호의5	80	90	100
러.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92조제3항제4호	80	90	100
며.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	법 제92조제3항제5호	80	90	100

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버. 법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)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)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92조제2항제2호	100 200	150 200	200 200
서. 법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)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)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92조제2항제3호	100 200	150 200	200 200
어.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92조제1항제5호	100	150	300
저. 법 제5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92조제3항제7호	80	90	100
처.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(법 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1)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)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92조제2항제4호	100 200	150 200	200 200
커.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(법 제4조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만 해당한다)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92조제3항제8호	30	45	70